

삼척시 보건소장(개방형직위) 임용시험 시행계획 **재공고**

삼척시 보건소장(개방형직위)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2년 3월 8일

삼척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

임용예정 직 위	임용예정 직 급	임용 인원	임용 기간	직 무 내 용
보건소장	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(개방형4호)	1명	2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, 조사.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 지도.관리.육성 국민건강증진·구강건강·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·증진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·증진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그밖에 난임 예방관리,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등

※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임용기간 5년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

2. 임용신분

- 민간인의 경우에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, 임용기간동안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
-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·승진·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

3. 응시자격

가. 공통요건

- 연 령 : 20세 이상(2002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거주지, 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)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)

《 지방공무원법 제31조 : 결격사유 》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※ 단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중의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나. 자격요건 ※필수요건을 갖추고, 경력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

구 분	자 격 요 건
필수요건	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별표1에 따른 보건·식품위생·의료기술·의무·약무·간호·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

구 분	자 격 요 건	
경력요건 (하나이상 해당자)	학 력 준	《박사학위 소지자》 ▷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.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.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
		《석사학위 이하 소지자》 ▷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.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.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
	자 격 증 준	▷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.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.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
	경 력 준	《공 무 원》 ▷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▷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《민 간 인》 ▷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.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		
※ 관련분야 범위 : 보건, 식품위생, 의료기술, 의무, 약무, 간호, 보건진료 등과 관련된 분야 ※ 자격 요건 적용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으로 함		

※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

4. 보수수준

-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
-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채용
예정 직급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, 임용예정자의
경력·능력·자격 등을 고려하여 하한액의 130% 범위 내에서 결정

연봉등급	상 한 액	하 한 액	비 고
개방형 4호	-	63,430천원	

※ 연봉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
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방법

○ 제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 제출서류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

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7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○ 제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

능력요건 평가요소

-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③ 변화관리능력
- ④ 조직관리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

-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개인별 프리젠테이션(10분 내외) 포함 (발표파일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)

※ 응시자가 없는 경우, 내부 응시지만 있는 경우, 선발시험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 없는 경우 재공고 실시

6. 시험일정

공고기간	응시원서 접수기간	시험 구분	시험 일자 및 장소 공고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2022.03.08. ~ 2022.03.18.	2022.03.21 ~ 2022.03.25	서류전형			2022.04.06.(수)
		면접시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		

※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7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2. 3. 21. ~ 3. 25.(5일간) 18시까지
- 접수장소 : 삼척시청 총무과 인사부서(☎ 033-570-3234)
- 접수방법 : 방문 및 우편(등기)접수

▶ 주 소 : (25914)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총무과 인사담당자

※ 우편(등기)접수의 경우 **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**하며, **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만 유효한 접수로 인정**함

※ 우편(등기)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**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** 주시기 바라며(☎033-570-3234), **응시수수료를 우편물에 동봉**하여야 하며, 접수된 응시표는 이메일로 송부함

○ 제출서류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.(별지 제1호 서식)
- ② 응시원서(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) 1부.(별지 제2호 서식)
 - 응시수수료 : 10,000원
 - ※ 응시자는 **삼척시 수입증지 인증 후 원서 제출(인증처 : 시청 본관 1층 민원실 2번 창구)**
 -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수급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
- ③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.(별지 제3호 서식)
- ④ 직무수행 계획서(발표자료 포함) 1부.(별지 제4호 서식)
- ⑤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.(별지 제5호 서식)
-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.(별지 제6호 서식)
- ⑦ 주민등록초본 1부. *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
- ⑧ 경력(재직)증명서 1부.(6개월 이내 발급)
 - 경력(재직)증명서는 응시분야 관련 실무에 한하여 제출
 - 경력(재직)증명서에는 **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날인과 연락처, 응시자의 근무부서·직책·담당업무·근무기간과 상근/비상근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** 서류이어야 함
 - ※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 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 반드시 명기
 - 제출된 경력(재직)증명서로 해당 분야 근무여부 인정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, **응시자가 경력(재직)증명서 발급부서에서 관련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**하여야 함
-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
 -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“보험가입 전체기간” 발급
 -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- ⑩ 자격증(의사면허증) 사본 1부.(해당자에 한함)
- ⑪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.
 - 대학교 등 졸업증명서와 석·박사 학위증명서를 함께 제출
- ⑫ 학위·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 및 요약서 1부
 - 해당자에 한함, 논문 표지사본 첨부
- ⑬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.(별지 제7호 서식)

8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.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습니다.
-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.
-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 및 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임용시험에 있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삼척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- 재공고에 따른 기존 출원자들은 별도로 응시원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단, 응시를 포기하실 경우 기존 제출한 응시원서를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삼척시청 총무과(☎033-570-323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